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Ⅰ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제38호, **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Ⅱ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

2. 주요내용

○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에 대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수금이 발생하고, 예탁금 원금회수금액이 상향조정되어,

○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〈표 2-1〉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·지출 계획변경(안)

(단위 : 백만원)

< 수입계획 >			
목	당초계획 (A)	변경계획 (B)	증·감 (B-A)
합 계	606,516	961,562	355,046
융자금원리금회수	21,974	21,974	-
예수금	55,446	318,055	262,608
예탁금원금회수	215,914	300,693	84,779
예치금회수	286,527	286,527	-
이자수입	26,654	34,313	7,659

< 지출계획 >			
편성목	당초계획 (C)	변경계획 (D)	증·감 (D-C)
합 계	606,516	961,562	355,046
융자금	15,200	15,200	-
예탁금	15,000	15,000	-
예수원리금상환	222,865	222,865	-
예치금	353,449	708,495	355,046
기본경비	2	2	-

3. 검토의견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[1]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
- 다만, 재무활동에 포함되는 예치금은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을 통하여 재무활동을 정책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[2]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**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**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지출항목인 예치금을 현행보다 3,550억 4,600만원 증액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변경범위가 100.5% 증가되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

- 아울러 동 기금의 경우,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 각 회계별로 여유자금이 발생함에 따라 각 회계와 기금간 전·출입에 따른 의존도를 낮추고자 타 회계의 여유자금(예수금 2,626억 800만원[3])과 타 회계에 맡겨둔 예탁금 원금(847억 7,900만원[4]) 및 이자수입(76억 5,900만원[5])을 수입계획에 편성하고,

- 수입계획의 변동에 따라 발생된 여유자금 등 3,550억 4,6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이 설치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---

2) 행정안전부, 「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, p.294
3) ① 교통사업특별회계(151억 800만원)
② 주택사업특별회계(690억원+100억원+185억원)
③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(1,500억원)
4) ① 일반회계중 예탁금 원금회수(645억원)
②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중 예탁금 원금회수(202억 7,900만원)
5) ①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(67억 8400만원),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(10억 1,700만원)
②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(△1억 4,300만원)